

자본이득과세제도 개선방안*

오 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목 차 ■

- I. 서론
 - II. 자본이득과세의 이론적 접근
 - III. 외국의 제도
 - IV. 현행 자본이득과세제도
 - V. 개선방안의 모색
 - VI. 결론
-

I. 서론

증여에 대한 완전포괄과세 개념이 도입된지 10년이 되어간다. 증여과세상으로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불과한 계산상 경제적 이익의 이전까지 포괄하는 완전포괄증여개념이 도입되었지만, 개인에 대한 소득과세상으로는 여전히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측면에서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기능하면서, 개인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대한 과세측면에서는 소득세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주의적 과세방식으로 과세상 포괄성이 미진한 특성이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자본이득, 즉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양도차익 및 파생상품손익이 과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 소득세제

* 이 논문은 2007년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된 것입니다(HY-2007-n).

투고일 : 2012. 6. 29, 심사일 : 2012. 7. 26, 게재확정일 : 2012. 8. 18.

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이중과세 및 무과세의 영역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 양도소득세제가 경제적으로 자본이득이 있는 곳에 일관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모습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세제도가 추구하는 형평성 및 중립성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우리 소득세법상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과세소득의 범주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이태로, 과세소득의 개념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6) 및 오윤, 소득포괄주의 과세 도입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Vol.9 No.2, 2008) 등이 있다. 자본이득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노영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비교(한국조세연구원, 2002.12), 홍범교·김진수,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한국조세연구원, 2010.12) 및 안종석·전병목, 자본소득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한국조세연구원, 2007.12)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조세평등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조세법상 평등원칙은 주로 응능부담의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의할 때 경제적 실질로 보아 실질적 담세력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과세하며, 담세력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한편 조세평등의 다른 측면에는 응익부담의 원칙이 존재한다. 조세부담을 사회계약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는 토대 위에 담세력보다는 실제 받은 혜택을 파악하여 과세하며, 담세력이 많더라도 받은 혜택에 비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오늘날 조세평등주의는 응능부담의 관점에서 담세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실질적 평등의 차원에서 수평적 평등 및 수직적 평등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¹⁾ 수직적 평등의 도모를 위해 어느 정도 세율체계를 누진적으로 설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위의 조세평등주의의 개념을 수용하여 현행 세제를 분석하고자 하며, 조세평등주의 자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1) 20세기 들어 조세평등주의는 응능부담원칙이 추가 되며, 응익부담원칙이 부가 되는 질서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Klaus Tipke/Joachim Lang, Steuerrecht, Verlag Dr. Otto Schmidt Köln, 2010, pp. 88-92); 金字 宏, 『租稅法』, 제10판(弘文堂, 2005), pp. 87-91, 김완석, 『소득세법론』(광교이텍스, 2007), pp. 33-34 참조.

생략한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외국제도와외의 역사적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비교 국가로는 우리 세계의 발전에 영향을 준 독일, 일본 및 미국을 설정하고 다른 국가들은 논의상 필요할 경우 언급한다.

II. 자본이득과세의 이론적 접근

1. 자본이득의 본질

(1) 개념

자본이 존재하는 형태로서 자산 또는 재산은 사회의 누군가에 의해 소유되고 사용된다. 자산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에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있다.

자산은 존재하면서 그 가치에 변화가 있게 된다. 자산의 가치 변화는 자본과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가 작용한 결과이다.

자본이 작용하여 발생한 자산의 가치변화가 실현된 이득이 ‘자본이득(capital gain)’이다.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자산을 ‘자본자산(capital asset)’이라고 부를 수 있다.²⁾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본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에 변화가 있게 된다. 따라서 자본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회비용이 소요된다.

(2) 특성

자본이득은 해당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미래현금흐름(expected future cash flow)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가치³⁾가 시점 간 달라짐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2) Michael J. Graetz and Deborah H. Schenk, *Federal Income Taxation*, Foundation Press(3rd ed., 1995), p. 565, 578 참조.

3) 자산가치 = $\sum (C1/(1+r), \dots, C\infty / (1+r)^\infty) \approx C/r$
 미래현금흐름(C): 이자, 배당, 임대료 및 사용료 등

다.⁴⁾ 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자본이 작용하여 발생한 가치변화가 실현된 이득이 ‘자본이득(capital gain)’이며, 노동력까지 더불어 작용한 결과 실현된 이득은 자본이득 이외의 이득이다. 그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이 있다. 사업소득은 자본과 노동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치이며, 이에는 자본과 노동 각각의 기회비용이 소요된다.

둘째, 자본가가 자본자산으로부터 얻는 자본이득 및 그것을 얻는데 소요되는 ‘자본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of capital)’은 ‘생산요소의 제공(provision of production factor)’과는 무관한 것이다.

국민경제 순환구조 안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산업활동(industrial activity)에 소요되는 자본을 제공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의 이자 또는 배당은 국민총생산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그 대가를 분배받은 것이다. 자본가가 자본을 단순한 청구권 이외의 채권(bond), 주식(stock) 및 부동산(real property) 등의 타인에게 지배권을 이전할 수 있는 실물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자산을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는 생산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이자, 배당 및 임대료를 창출하는 동시에 그 실물 자산의 소유를 통해 자본이득을 창출하게 된다.

셋째, 자본이득은 과거 무엇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와는 무관한 것이며, 미래의 해당 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에 제공한 자본자금의 소득인 유보이익이 축적된 결과치가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당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받을 미래 배당현금흐름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자산: 채권, 주식, 부동산 및 지적 재산권 등

자본이득: 자산가치의 시간적 변화분

- 4) 국민경제 순환구조 안에서 자본이득의 발생원인을 구분하여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선, 시장이자율에는 변화가 없는데, 기대에 부합하게 결과측면에서도 미래현금흐름이 변화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써 후술하는 경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미래현금흐름에는 변화가 없는데, 시장이자율만 변화하는 경우이다. 이 때 자본이득은 해당 자본자산에 대한 투자의 기회비용(이자)이 낮아진 것에 대한 보상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적인 미래현금흐름 및 시장이자율에는 변함이 없는데, 당사자의 ‘기대’만 변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국민경제순환과 무관한 경우가 된다(Richard A. Brealey and Stewart C. Myers,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McGraw-Hill, 1996, pp. 59-60).

2.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과세이론

(1) 자본이득이 소득과세 대상인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소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로부터 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응답적 관점), 발생한 소득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운영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응답적 관점).

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주 설정과 관련해서는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이 거론된다. 전자는 소득이 특정한 물건 또는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그 발생한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그것의 귀속자가 누구인가와는 무관하게 과세하면 된다는 이론이다. 후자는 그것이 어느 물건 또는 대상에서 발생하는지와는 무관하게 특정인에게 귀속하는 모든 경제력의 증가분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소득원천설은 원천이 존재하는지 그 원천은 무엇인지를 구별해 과세하는 것이다. 순자산증가설은 그 원천을 불문하는 것이며 응답적 관점에 보다 충실한 것이다.⁵⁾

소득원천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으로서 일반적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소득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자나 배당은 자본의 소유자가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가 그것으로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도와준) 것, 즉 생산활동과 관련된 원천에 기인한 것이지만, 자본이득은 그러한 원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순자산증가설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본이득은 통상의 소득처럼 그 귀속자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게 된다.

화폐가 없어서 어떤 자산을 처분할 때 다른 자산을 취득해야 하는 교환경제를 상정한다면 모든 자산은 교환 자체로부터는 이득을 기대할 수 없고 사용을 통해서만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⁶⁾ 자본이득은 본질적으로 생산과정과 직접적인

5) Klaus Tipke/Joachim Lang, 앞의 각주 1)의 책, pp. 205-206, 245-246.

관련을 갖지 않은 자산의 처분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서 화폐경제체제하에서만 인식할 수 있는 경제력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화폐경제체제를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리가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과세의 정당성을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⁷⁾ 통상적인 물가상승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할 것인가는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한 다음의 문제가 될 것이다.

(2) 자본이득의 적정한 조세부담수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수준의 논의는 첫째,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노동소득⁸⁾에 대한 과세와 차등을 둘 것인지, 둘째, 자본소득 중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와 차등을 둘 것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소득은 자본이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첫째 논의, 즉 자본에서 창출되는 소득과 노동에서 창출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래 포괄적 소득세론, 생애지출세론 및 최적과세론이 있어 왔다.⁹⁾

포괄적 소득세론은 자본소득(capital income)과 여타소득간 소득으로서의 동질성을 강조하며 동일한 수준의 과세를 주창한다. 응능적 관점 및 순자산증가설적인 입장과 결과가 동일하다.¹⁰⁾

한편, 생애지출세론이 개인의 담세력을 생애소비기회로 인식한다.¹¹⁾ 포괄적 소

6) 1974년까지 우리의 소득세법은, 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던 반면 양도에 따른 소득은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7) 소득금액을 명목가치에 의해 계산하는 것은 오늘날 소득과세의 일반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Klaus Tipke/Joachim Lang, 앞의 각주 1)의 책, pp. 248-249).

8) 소득 중에는 사업소득과 같이 노동소득의 성격과 자본소득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는 노동소득적인 부분과 자본소득적인 부분을 나누어 논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노동소득에 포함하여 논한다. 본고의 논의의 주제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9) OECD, *Fundamental Reform of Personal Income Tax(No.13)*, 2006, pp. 71-93 참조.

10) 자본이득은 순자산증가설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 종류의 소득과 동일하므로 그에 대해 동일한 정도의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11) Tipke/Lang은 전통적인 소득과세법의 오류 중 하나로서 '기간과세원칙'을 들면서 생애전체를 통틀어 담세력을 파악하고 그에 부합한 과세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Klaus Tipke/Joachim Lang, 앞의 각주 1)의 책, p. 207).

득세론이 개인의 담세력을 연간소비기회로 인식하는 것과 대비된다. 생애지출세론에 의하면 특정 시기의 자본소득은 과거 소비기회를 포기한 것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과거 발생한 소비기회는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이제 그것을 다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본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된다.¹²⁾ 생애지출세론의 하나로서 위험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하자는 논의가 있다. 자기자본에 의해 취득한 자본자산의 경우에도 자본의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해주고 위험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것이다.¹³⁾

최적과세론은 자본소득과 여타소득간 소득으로서의 공통점을 인정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되 그 차이점을 고려하여 과세방식과 부담수준을 달리하자는 것이다.¹⁴⁾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최적과세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소득과세제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구현형태 중 하나가 이원적 소득세제이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자본소득을 노동소득과 구분하며, 모든 자본소득을 비례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¹⁵⁾

둘째는 자본소득 중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와 차등을 둘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다. 이는 이원적 소득세제 중 북구국가가 도입한 것처럼 양자를 동일하게 할 것인지를 논의라고도 볼 수 있다.

자본이득은 자본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같은 다른 자본소득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비교할 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상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에는 과세를 완화하여야 할 이유가 되는 요인과 과세를 강화하여야 할 이유가 되

12) 이에 의하면 특정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후 금액 중 소비되고 남은 금액 즉, 저축 금액(S)후 증식될 것이지만, 그 증식은 시간의 기회비용 정도로 증식할 것이며, 그것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의 가치로 환원하면 (S)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13) 자본이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자본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 타인자본에 의해 취득한 자본자산의 자본이득금액은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에 해당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의 세제에서는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자본자산의 자본이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안종석·전병목, 『자본소득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한국조세연구원, 2007. 12), p. 48.

15) 자본소득과세상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서 화폐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실을 고려하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는 요인을 찾을 수 있다.¹⁶⁾

전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익적 관점에서의 논의이다. 우선 자본이득은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생산활동대가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논리 중 응익적 관점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자본이득 과세를 응익적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자본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제의 존재로부터 혜택을 본 것에 대한 부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 자본이득 과세에는 ‘경제적 이중과세’의 측면이 존재한다. 자본이득 발생의 원천이 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은 미래에는 현금이 될 것인데 그 현금에 대해서도 과세할 것이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이중과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가격은 미래임대료의 현재가치인데 미래의 소유자가 임대료를 벌 때 임대소득으로 과세될 소득의 일부분을 현재 처분하는 소유자에게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경제적 이중과세는 응능적 관점에서 여러 조세¹⁷⁾ 분야에서 용인되고 있다.

둘째, 응능적 관점에서의 논의이다. 자본이득은 자산가치의 일반적 상승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자산의 사용가치는 그대로인데 교환가치만 증가하여 이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산이 제공하는 사용가치를 그대로 향유하여야 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의 경제력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사회가 그렇게 보아 과세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과세할 경우 자산의 교환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lock-in effect).¹⁸⁾

후자는 다음과 같다. 자본이득은 과거 소비기회의 포기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래 자산가치의 변화에 대해 위험부담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위험 프리미엄, risk premium)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보다 더 중과세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사용가치를 제공하는 다른 저렴한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면 담세능력이 확실하게 증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해 무겁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다고도 할 수 있다.

자본이득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간의 차이점 및 그에 대해 과세상 차등을 두어

16) Michael J. Graetz and Deborah H. Schenk, 앞의 각주 2)의 책, pp. 571-576 참조.

17) 현행 세법상 법인세와 소득세간,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간 경제적 이중과세가 존재한다.

18) OECD,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Individuals(No.14)*, 2006, pp. 49-63.

야 할 이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은 복구식 이원적 소득세제에 보다 근접하는 제도전환을 함으로써 자본이득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간 과세상 차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Ⅲ. 외국의 제도

오늘날 자본이득은 소득의 하나로서 과세하고 있지만, 소득과세의 창안 당시부터 소득으로 과세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말 소득세가 창안된 영국에서조차 자본이득은 1965년에 와서야 과세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자본이득을 과세하게 된 것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을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전환하여 그것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아래에서는 우리 소득세법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 독일, 일본 및 미국의 세법상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최근 개혁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독일과 일본에서는 자본이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되, 자본소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동소득과는 차별되는 부담수준을 설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져 오고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1. 독일

독일에서 소득세는 19세기초 몇몇 독일제국 구성국들에 의해 과세되기 시작한 것이 그 효시이다. 1891년 프로이센은 소득원천설에 입각한 소득과세제도를 정립하였다.

독일연방 단위로는 1925년 소득세법¹⁹⁾ 이래 일부 자산의 단기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여 왔다. 그 이외의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오다가 2009년 이원적 소득세제인 Abgeltungssteuer의 도입 이후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 소득원천설에 입각한 것이었다.

독일의 이원적 소득세제는 2003년 독일경제자문가회의의 제안 이후 전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것이다.²⁰⁾ 2006년 연방재무부 자문관실은 ‘수정된 이원적소득세제 (Reform der Einkommens- und Unternehmensbesteuerung durch die duale Einkommensteuer)’를 제안하게 되었다.²¹⁾ 2009년 1월에는 독일식 ‘이원적 소득세제(Dualsteuer)’인 Abgeltungssteuer를 도입하였다.²²⁾

(1) 자본소득 단일세율 분리과세

2009년부터 자본소득은 25%의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 완납적 원천징수 - 를 통해 납세의무가 이행된다. 독일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컬어 ‘완납적 원천징수세금(Abgeltungssteuer, final withholding tax)’이라고 한다.²³⁾

2008년까지 비과세되던 1년 이상 보유 주식양도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²⁴⁾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주식에 대해서처럼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였는데 이제

20) Wissenschaftlichen Beirats be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lat Tax oder Duale Einkommensteuer? Zwei Entwürfe zur Reform der deutschen Einkommensbesteuerung”, Juli 2004; Klaus Tipke/Joachim Lang, 앞의 각주 1)의 책, pp. 211-222.

21)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Max-Planck-Institut für Geistiges Eigentum, Wettbewerbs- und Steuerrecht/Zentrum für Europäische Wirtschaftsforschung, “Reform der Einkommens- und Unternehmensbesteuerung durch die duale Einkommensteuer”, Schriftenreihe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Federal Ministry of Finance series), Bonn, Vol.79 (2006).

22) Christoph Spengel & Wolfgang Wiegard, “Dual Income Tax: A Pragmatic Tax Reform Alternative for Germany”, CESifo DICE Report 3/2004; 연방헌법재판관이었던 Paul Kirchhof는 포괄적 소득세제를 주장하면서 이원적 소득세제가 형평성(응능부담의 원칙, Leistungsfähigkeitsprinzip)의 가치에 반하는 조세라고 비판하고 있다(Paul Kirchhof, Der Weg zu einem neuen Steuerrecht,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GmbH&Co. KG, 2005. 9, pp. 139-142).

23) 자본소득에 대해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도록 되어 있지만 납세자가 원하면 종합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납세자는 자본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하여 종합신고한다면 실효세율이 25%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 종합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납세자가 그렇게 판단하고 종합신고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으로 25%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24) 2008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당시 법에 의한 비과세대상 주식양도차익은 이후 처분할 경우에도 과세에서 면제된다(Wolfgang Kessler and Rolf Eicke, “Welcome to the German Dual

는 주식과 함께 과세대상에 편입하였다. 부동산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앞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증여 및 상속과세와 양도소득과세의 조정

증여 및 상속을 자본이득 과세계기로 보지는 않는다. 증여 및 상속시점에 증여자나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이 이전된다. 증여세 및 상속세는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다(ErbStG §12).

이에 따라 증여 및 상속과세와 양도소득과세상 경제적 이중과세의 현상이 나타난다. 다만,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자가 증여나 상속으로부터 5년 이내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그의 양도소득 과세상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양도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식(Anrechnung der Erbschaftsteuer auf die Einkommensteuer)으로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해주고 있다.²⁵⁾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개인은 증여세를 과세받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도 실제거래가액이 인정된다. 다만,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양수하거나 주주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과세를 한다(Verdeckte Gewinnausschüttung, KStG §8).

(3) 자본소득내 손익통산

자본손실은 자본소득과의 상계가 허용된다. 증권양도손실은 증권양도차익 뿐 아니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의 상계가 가능하다.²⁶⁾ 예를 들면, 펀드수익증권

Income Tax”, *tax analysts*, tax notes international, August 27, 2007, pp. 837-841;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nr_87730/DE/Wirtschaft_und_Verwaltung/Steuern/Veroeffentlichungen_zu_Steuerarten/Abgeltungsteuer/004,templateId=renderPrint.html (방문일자 2012년 4월 3일) 참조.

25) <http://www.fhp-krefeld.de/pdf/MR022009-Beilage-ErbSt.pdf>, p. 5(방문일자 2012년 4월 3일) 참조 EStG §35b.

26) 차손이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게 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주식 및 은행계좌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모으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 기관이 그러한 계산을 맡아서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차손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의 상계가 가능하다. 다만, 주식양도차손은 주식양도차익과의 상계만 가능하다. 주식양도차손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²⁷⁾

자본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 예를 들면, 금융비용, 계좌관리비용 및 자문비용은 실비로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1인당 연 801유로까지 일괄공제한다. 부부에게는 연 1,602유로의 공제를 허용한다.

<자본소득 과세(독일)>

자산	소득종류	과세방식	
		~2008	2009~
예금	이자소득	종합소득세율 과세 ²⁸⁾	단일세율 ²⁹⁾ 원천징수
채권 (bond)	이자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종합소득세율 과세 ³⁰⁾ 양도소득 ³¹⁾ :1년이상 보유, 비과세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 모두 단일세율 원천징수
주식	배당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50%만을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장기(1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은 비과세; 개인 연간 양도소득공제액 제도 적용됨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60%만을 단일세율 원천징수 ³²⁾ ; 장기보유비과세 및 양도소득공제 제도 폐지; 경과조치(2008년말 현재 보유분으로서 장기보유후 처분시 양도소득 면세)
파생 상품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주식처럼 과세됨; 다만, 일부 신종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에 의한 비과세제도 적용하지 않음	모두 단일세율 원천징수. 장기보유 면세 폐지
부동산	양도소득	10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좌동

27)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가 있다. 2008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증권으로부터의 처분손실은 2013년 이전에 처분할 경우 상계가 인정된다. 2008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의 처분손실은 2013년 이후에도 상계가 가능하다.

28) 30% 세율에 의한 예납적 원천징수가 전제된다.

29) 25%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이에 5.5%의 solidarity surcharge(연대부가세)가 붙어 실제 세율은 26.375%가 된다.

30) 최고세율 42%

31) 만기상환이나 처분의 경우 발생하는 것

32) 법인세와의 경제적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장치이다(EStG 제3조 제40호).

2. 일본

일본은 프로이센 소득세법을 도입하여 소득세제를 정립하였다. 자본이득은 전후 미국의 영향으로 비로소 과세되기 시작하였다.³³⁾ 일본에서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논의는 1997년 일본 세제조사회 금융소위원회 보고서에 의해 개시되었다. 2004년 6월 15일 정부세제조사회 금융소위원회는 ‘금융소득과세 일체화에 관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보고하였다. ‘금융소득과세 일체화’ 개념은 일반 개인의 투자 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 금융상품간 과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세제를 단순화하며, 일반개인의 투자위험을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저축율이 저하되고, 가계금융자산 중 주식 또는 주식투자신탁의 비중이 줄어들어 가계금융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경제활력을 유지하는데 긴요하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 금융소득 일체화조치가 반영된 현행의 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본소득 단일세율 분리과세

이자소득에 대해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 - 완납적 원천징수 - 한다.

배당소득에 대해 2009년 20% 세율에 의한 상장주식 배당의 신고분리과세제도 가 창설되었다. 이는 주식양도손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기 위함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의 배제장치는 원칙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2013년 귀속 배당소득까지에 대해서는 종합신고를 통해 배당공제(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일본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는 신고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우리 세제상 양도소득이 종합소득과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33) 194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일정 범위의 양도소득이 제8종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었다(金字 宏, 租稅法, 제10판, 2005년, p. 62).

<양도소득과세(일본)>

분리단기양도소득	토지등 · 건물등	5년이하	30% (주민세 9%)
분리장기양도소득		5년초	15% (주민세 5%)
주식등 양도소득	주식등	--	15% (주민세 5%) 상장주식 7% (주민세 3%)

배당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20%(2013년까지 상장주식 10%)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³⁴⁾ 소액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비과세구좌 내 소액 상장주식등에 관계되는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투자한도 : 3년간 총 3백만엔).

파생상품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선물 · 옵션거래차익은 신고 분리과세하면서 다른 종류의 소득과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물과 파생상품 양자 간의 양도손익 통산은 불가능하다.

(2) 증여 및 상속과세와 양도소득과세의 조정

개인에 대한 증여 및 상속의 경우에는 장래 수증자 및 상속인이 처분하는 단계까지 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이월된다.³⁵⁾ 개인이 증여와 상속(한정승인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증여자와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을 승계한다(일본 소득세법 제60조).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다(일본 상속세법 제22조).³⁶⁾

34)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상장주식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배당소득과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연환산 1회의 지불금액이 10만엔 초과시)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종합과세하고 배당공제를 허용한다.

35) 1972년까지는 이 경우에 대해 간주양도과세를 하였다. 그 결과 수증자 및 상속인이 양도시 취득원가는 간주양도시점의 시가를 사용하였다.

36) 개인이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중첩적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만 과세한다(일본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6호).

증여 및 상속에 대한 과세와 양도소득과세의 경제적 이중과세는 용인되고 있다.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개인은 거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과세받는다(일본 상속세법 제7조).³⁷⁾ 이 경우 그가 양수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으로 한다. 원래의 저가양도자에 대해서는 간주양도과세가 없지만 저가양수자가 동일한 이득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과세를 동시에 받게 되어 경제적 이중과세가 있게 된다.

법인에 대한 증여와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의 경우 그 증여와 상속은 양도소득과세계기로 본다(일본 소득세법 제59조).³⁸⁾ 그 증여 또는 상속 시점의 시가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みなし讓渡所得課税)하는 것이다.³⁹⁾ 이와 같이 간주양도한 것으로 보는 방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간주양도로 본 시점의 과세가액 즉 당시의 시가를 사용한다.

법인이 무상으로 양도한 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과세된다. 법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중과세는 있게 된다. 다만, 증여받은 법인은 그것을 기부금으로 본다.

이러한 간주양도과세의 원칙은 법인에 대해 현저히 낮은 가액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현저히 낮은 가액의 대가라 함은 시가의 2분의 1 미만의 가액을 대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일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⁴⁰⁾

(3) 제한된 범위의 손익통산

개인의 금융상품의 손익통산은 2009년 귀속분부터 다음과 같이 허용되어 있다.

-
- 37)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하게 된다.
(<http://www.nta.go.jp/taxanswer/zoyo/4423.htm>(방문일자 2012년 4월 3일))
 - 38) 법인과 무상 또는 저가 거래에 대해 간주양도과세를 하는 것은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인에 대한 과세에는 경제적 이중과세가 있게 되는데 법인과의 자산 거래에서 자산가액을 조작할 경우 자본이득과세에 빈틈이 생기지는 않지만 경제적 이중과세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39)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는 익금으로 산입한다.
 - 40) 개인이 동족회사에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저히 낮은 가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간주양도소득과세(みなし讓渡所得課税)를 한다(일본 소득세법 제157조).

<금융상품 손익의 통산(일본)>

손실	소득			
	<배당소득> •상장주식의 배당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수익 분배금	<주식양도소득> •상장주식의 양도익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양도익	<이자소득> •예적금의 이자 •공사채의 이자 •공사채투자신탁의 수익 분배금	<비과세> •공사채의 양도익 •공사채투자신탁의 양도익
•주식양도손 •공모주식투자신탁양도손·해약손	상계허용 (3년 이월공제)	상계허용 (3년 이월공제)	상계불허	해당 없음
•공사채양도손 •공사채투자신탁의 양도손·해약손	손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출처 : 일본 재무성

3. 미국

미국에서 소득세는 1862년 남북전쟁 당시 링컨 행정부에 의해 최초로 부과되었다.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921년 법원이 이를 과세소득으로 인정함에 따라 제대로 과세하기 시작하였다.⁴¹⁾ 이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일반적인 소득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 왔다.

미국의 세제는 이원적 소득세제적 요소보다는 포괄적 소득세제적인 요소가 지배하고 있다. 포괄적 소득개념은 그 논리적 연장선에서 자본소득간 동일한 수준의 과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 내국세입법은 여타의 소득과 자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본소득의 특성에 따라 과세상 다소간 차이를 두고 있다.⁴²⁾ 아래 미국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소개

41) Merchants Loan and Trust Co. v. Smietanka(255 U.S. 509) 사건. 피상속인인 망자가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위해 신탁하고 이익을 분배토록 하면서 주식배당과 자산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은 '소득(income)'이 아니라 '원본(principal)'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분배하지 않도록 정해 놓았다. 세무서장은 이를 무시하고 그 이득에 대해 과세하였다.

42) 미국의 세제에 대해 IMF가 현행 소득세제를 중립성(효율성), 형평성, 단순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제를 통합한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

한다.

(1) 원칙적 종합과세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세율(10,15,25,28,33,35%)로 종합과세한다. 시장할인액은 일반소득인 저축소득(이자소득)으로 구분한다.

배당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부터는 이자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한다.⁴³⁾ 개인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

자본이득의 경우 장·단기구분을 하며 상호합산 및 타 소득과 합산시 제한을 둔다.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⁴⁴⁾

자본손실의 자본이득과의 상계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단기자본이득이 고율로 과세되므로 장기자본손실은 우선 장기자본이득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단기순자본이득과 상계할 수 있다.

자본손실의 일반소득과의 상계는 연간 3천달러로 제한된다. 남은 손실은 제한 없이 이월된다.⁴⁵⁾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는 장기 세율이 10%, 20%로 인상되었다.⁴⁶⁾ 1년 이하 단기보유의 경우에는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과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선물, 옵션 등의 손익은 60%를 장기자본손익으로 40%를 단기자본손익으로 처리한다.⁴⁷⁾ 단기손익은 통상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장기손익은 낮은 비례세율 적용한다.

입, 단일세율제도, Unlimited Savings Account제도 및 소매세제도 등의 대안을 검토한 바 있다(Thomas Dalsgaard, "US Tax Reform: An Overview of the Current Debate and Policy Options", IMF Working Paper, IMF, 2005. 7).

43) 2010년까지 한시적 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과세하였다. 2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개인 납세자가 2003~2010년 사이에 지급받는 일반 배당소득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소득세율이 25%이하(10% 또는 15%)인 저소득층 납세자는 5%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44) 내국세입법 제1조(h)(1)

45) 내국세입법 제1211조

46) 2010년까지는 배당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5%, 1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47) 내국세입법 제1234조

(2) 증여 및 상속과세와 양도소득과세의 조정

증여에 의한 부의 무상이전은 자본이득의 과세계기로 보지 않는다.⁴⁸⁾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시가로 과세된다.

수증자는 증여자의 장부가액 및 보유기간을 그대로 이어받는다.⁴⁹⁾ 다만, (증여세액)×[(증여시 시가)-(증여자의 장부가액)]/(증여시 시가)은 증여자의 장부가액에 가산되어 이전된다.⁵⁰⁾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받는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취득원가를 물려받지는 않는다(step-up basis).⁵¹⁾

미국 내국세입법상 증여과세와 양도소득과세간에는 경제적 이중과세가 용인되는 반면, 상속과세와 양도소득과세간에는 step-up basis에 의해 경제적 이중과세가 배제되고 있다.

(3) 투자자산소득

내국세입법에서 투자자산(investment assets)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property held for investment)을 의미한다.⁵²⁾ 납세자의 소득창출에의 참여(participation) 정도가 아주 미미하거나 아예 없으면서 단순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이자, 배당, 연금(annuities), 사용료소득(royalty), 양도차익(gains)⁵³⁾을 창출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러

48) 영국에서는 증여세가 없다. 증여에 의한 부의 무상이전을 자본이득 과세계기로 본다. 영국에서는 상속시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 이전 7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에 의한 부의 무상이전을 자본이득 과세계기로 보지 않는다. 상속된 재산의 가액의 step-up basis를 인정한다. 호주 및 캐나다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다. 상속 및 증여를 자본이득 과세의 계기로 본다.

49) 내국세입법 제1015조(a)

50) 내국세입법 제1015조(d)(6)

51) 내국세입법 제1014조

52) 내국세입법 제163조(d)

53) 여기서의 양도차익(gains)은 투자자산의 매각에 따른 순이득(net gains) 중 순자본이득(net capital gains) 차감분을 의미한다. 순이득은 총이득에서 총손실을 차감한 것이다. 순자본이득은 총자본이득에서 총자본손실을 차감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자산의 처분으로 실현한 이득을 자본이득세율을 적용받는 부분과 기타의 부분인 투자자산소득으

한 소득을 투자자산소득(investment income)이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portfolio income이라 한다.

내국세입법이 투자자산의 개념을 설정한 이유는 그에 귀속되는 비용의 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투자자산소득에 귀속되는 비용은 크게 투자자산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조달한 자금비용인 이자와 기타의 비용으로 구분된다. 투자자금이자(investment interest)는 ‘순투자자산소득금액(net investment income)’을 한도로 비용인정된다. 투자자금이자(수동적 활동으로부터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공제한 이자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순투자소득금액이 투자자금이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허용되며 이월에는 시한이 없다. 투자자산소득에 귀속되는 투자자문료, 사무보조비, 금고사용료, 법률자문료 등 투자자산의 취득, 유지 및 처분에 따르는 기타의 비용은 잡손공제(miscellaneous deduction)항목의 하나로 조정후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2% 초과분 범위 안에서 공제가 인정된다.

투자자산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을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위험성이 많아 투기적 요소가 강한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을 노무소득 등 기타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한다면 과세기반이 잠식될 것을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재정행위를 이용한 과세기반의 잠식을 우려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투자자산소득은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을 상계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투자자산손실은 순영업이익(net operating income)과 상계할 수 없다. 여기서, 순영업소득과 순영업손실은 사업활동으로부터의 손익을 말한다.

4. 시사점

오늘날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상 자본이득은 소득의 하나로서 과세되고 있지만 그것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소득과는 차별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래 소득원천설적인 입장에 경도되어 있는 독일과 일본은 최근에야 자본이득을 포괄적으로 소득과세대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순자산증가설적인 입장을 유지

로 구분하기 위함이다.

해은 미국에서는 소득세법이 체계를 갖춘 직후부터 자본이득도 소득의 하나로 인정받아 소득으로 과세되어 오고 있다. 독일, 일본 및 미국 뿐 아니라 영국, 호주 및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소의 예외는 있지만 부의 무상이전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자본이득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그에 대한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추세에 불구하고 자본이득을 다른 일반소득에 대한 과세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에서 과세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자본이득을 이제 완전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과세수준은 일반소득과 달리 역시 낮은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미국세제상으로도 자본이득을 장기자본이득과 단기자본이득으로 구분하고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낮은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상 자본이득을 이자나 배당과 같은 다른 자본소득과의 관계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보는가는 순자산증가설 또는 소득원천설 중 어느 것에 입각하고 있는지는 일응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미국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본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소득원천설적인 독일과 일본의 경우 이원적 소득세제적인 제도개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형성해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자본소득을 노동소득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의 공통점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정 요건 하에서 자본손실을 자본소득(미국의 경우 일정 한도 안에서 일반소득 포함)과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순담세력을 포괄적으로 포착하고자 하고 있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IV. 현행 자본이득과세제도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1948년의 소득세법에 의해 정립되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자본이득은 1948년 ‘양도소득’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이 과세되기 시작하였지만 이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54년 개정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였다(구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법률 제319호, 1954.3.31). 양도소득과세가 별 실익을 거두지 못하자 1960년 양도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삭제되었다.

1975년에는 1968년 신설되었던 부동산투기억제세(당시에는 토지만 과세)를 소득세제로 흡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설하였다.⁵⁴⁾

아래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금액계산 및 부담수준의 순으로 분석한다.

1.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우리 소득세법의 일반적인 원칙대로 열거된 항목만 과세하는 방식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본이득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2호),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4호)로 열거되어 있다(소득세법 제94조). 기타자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회원권 및 시설물이용권 및 부동산유사주식이 포함된다. 소득세법은 여러 군데에서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합하여 ‘토지 등’이라고 하고 제3

54) 김완석, 『소득세법론』(광교이텍스, 2007), pp. 26-30.

호를 ‘주식 등’이라고 한다.

(2)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배제된 자본이득

1) 소득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개인의 채권양도차손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양도차손익은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잔여기간 중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변화가 있는 것이 되므로 기간소득인 이자소득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

개인의 선물 및 옵션 파생상품거래는 과세되지 않고 있다.⁵⁵⁾ 반면, 결합파생상품의 이익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동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2) 양도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명시적으로 과세가 배제된 것

가) 완전배제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 중 개인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여 거둔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액주주란 대주주⁵⁶⁾ 이외의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주택 및 농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 중 1세대 1주택 양도 및 3년 자경농지 양도 후 대체취득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나) 이월과세

거주자가 2012년 말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신설하는 법인에게 이전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55) 소득세법상 선물거래로 인한 투자신탁 이익의 분배금을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179조 제12항).

56) 대주주는 전체 지분비율이 3%(거래소상장법인의 경우이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5%) 이상이거나 보유 시가총액이 100억 원(거래소상장법인의 경우이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상 인자를 말한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자 본인 소유분뿐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과세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를 받지 않으며 신설된 법인이 거주자의 취득원가를 승계하여 추후 그 법인이 매도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된다(조특법 제32조).

3) 양도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현행 소득세법에는 내용상 자본이득이지만 양도소득이 아닌 다른 종류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들도 있다.

주식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의 주식을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해당 주식에 귀속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본이득적인 성격이 있는 것인데 우리 소득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

자본이득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항목들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2013년부터 개인의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⁵⁷⁾

기타소득에는 양도의 형식을 빌려 일응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소득세법 제21조 제5호), 영화필름 등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소득세법 제21조 제6호), 광업권 등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소득세법 제21조 제7호),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소득세법 제21조 제22호)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들은 자본 뿐 아니라 노동을 원천으로 취득한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양도의 형식을 빌려 실현한 것이다. 이들은 통상의 자본자산의 양도로부터의 소득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57)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다. 이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양도가액의 80%(보유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90%)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의제한다. 미국과 일본은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하고 영국은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며 프랑스에서는 거래세만 부과한다.

2. 소득금액

소득세법상 특정한 개인에 귀속하는 양도소득금액은 ‘토지등’과 ‘주식등’의 그룹별로 계산하며 해당 그룹별 양도자산들의 당년도 손익의 순액으로 한다. 이렇게 계산한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양도한 개별자산의 양도손익금액의 산정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취득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및 매도비용이 포함된다.

(1) 증여 및 상속과세와의 조정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과세 및 그렇게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면 무상이전하는 자가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자산가치증가분은 무상이전할 때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⁵⁸⁾ 대신 무상으로 이전받는 자의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되게 하면서 이전받는 자의 장부가액은 무상이전 시의 시가로 하고 있다. 무상이전받은 자가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의 이와 같은 상황을 가리켜 무상이전 받은 자에 대한 장부가액상향조정(steppped up basis)에 의한 양도소득과세라고 한다.

자산의 무상이전은 통상 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진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극히 저가인 0원으로 양도, 즉 증여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 과세를 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시가까지 끌어올려 과세한다. 증여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상이전이 자산의 저가양도에 비해 훨씬 조세부담이 적게 된다.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무상이전과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한 과세상 차등이 없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는 시가에 미달하는 부분 즉 그 자산

58)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만을 포섭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양도소득과세상으로는 실제거래가액(0원)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의 시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받는다. 추후 양도시 해당 증여세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저가로 양수한 자는 양수가액 중 시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받는다. 추후 양도시 (양수가액)+(증여세과세가액)=(양수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자산의 양수도 거래에서 실제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중과세가 있는 것이다. 이는 자산의 무상이전의 경우 경제적 이중과세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자산양수도 거래에서 실제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아래와 같이 경제적 이중과세는 없는 것과도 대비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저가양수한 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를 과세받은 부분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런 이유로 경제적 이중과세는 없게 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고가 양수한 자가 양수한 가액은 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현행 세법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자산의 이전거래에서 조세의 부당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이중과세를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면 무상이전이든 자산의 고저가이전이든 동일한 방식의 경제적 이중과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산의 무상이전의 경우 이전받은 자의 장부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고저가양수도의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일관성을 결여한 부분이다.

(2) 손익통산

주식등의 양도손익간 통산과 토지등의 양도손익간 통산만 허용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주식양도차손은 주식양도차익과의 통산만 허용된다(소득세법 제102조). 순차손은 이월되지 않는다.

3. 부담수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⁵⁹⁾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식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은 중소기업주식은 10%,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30%, 나머지는 20%이다.

V. 개선방안의 모색

1. 자본소득과세 개선방향

(1) 포괄과세원칙의 확립

1980년대 이래 각국의 조세제도 개혁의 큰 방향은 과세기반의 확대와 세율의 인하(broaden tax base and lower tax rate)로 축약될 수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소득과세상 여러 요인들을 두루 고려하여 체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가능한 모든 소득의 종류에 대해 단일하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과세를 포괄화·단순화함으로써 조세를 시장에 대해 중립적으로 기능하게 함과 동시에 조세제도가 국가간 조세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현행의 우리 소득세법상 개인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산종류별로 상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으며,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차익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미래현금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소득과세의 포괄화는 최근 상증세법의 개정⁶⁰⁾에 의해 완전포괄의 증여개념이 도입된 것에 화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59)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억제의 목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2) 단일세율 분리과세 문제

자본소득 과세상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우리의 현행 세제상으로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사실상 이 방식에 의한 과세를 하고 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자본소득은 모두 동일하게 순액으로 과세하되 단일세율분리과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자본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라면 우리 소득세제도 이미 이원적소득세제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단일세율분리과세를 자본이득에도 확대할 것인가가 실질적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1) 단일세율 분리과세의 장점

단일세율 분리과세로써 자본소득과세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이는 우선 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고위험자산에 대해 중과세하면 저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될 것인데 이는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참여자들의 판단을 기초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수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장의 기능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자금이 과도하게 위험한 자산에 편중하는 현상을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고위험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정부 재정조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라면 시장 개입으로 민간의 판단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량화된 분석은 쉽게 찾기 어렵지만 독일에서는 이원적 소득세제로의 전환이 투자와 자본축적을 증대하고 후생도 증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⁶⁰⁾ 이원적 소득세제는 징세를 단순화하여 국내의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도 알려져 있다.

세제가 자본시장에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상품의 법적 형태에 따라 상이한 과세를 할 경우 나타나는 조세회피행태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을 수호하고자

60) Doina Maria Radulescu&Michael Stimmelmayer, "Implementing a Dual Income Tax in Germany: Effects on Investment and Welfare", Ifo Working Paper No. 20,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uenich, November 2005.

하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시장참여자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조세체계를 회피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고위험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과중한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제도 내에서 시장참여자가 여전히 그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는 실질적으로 고위험자산을 취득하면서 외양상 저위험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겐 고위험자산으로부터의 얻을 수 있는 것과 내용상 다를 바 없는 것을 저위험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arbitrage) 또는 차익거래는 특히 수익률과 위험을 요소로 하는 금융자산의 거래에 빈발한다. 위험의 인수에 따른 대가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세제에서라면 고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자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저위험자산을 취득하면서 그와 동시에 제3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고위험지위를 구성하는 데에 조세부담상 이득이 생기는 것이다.⁶¹⁾

2) 단일세율 분리과세가 갖는 문제의 소지

다른 한편으로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자본소득금액의 산정에는 실현주의의 제약이 있는 등으로 자본소득금액을 계산해 내기 어렵고, 사업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무소득으로 나누기 곤란하며, 소득종류간 과세상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단일세율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적 가치와의 관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조세평등주의이다. 조세평등주의를 논할 때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각인의 능력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평등이다. 평등의 개념에는 수평적 평등 및 수직적 평등이 있다.

수평적 평등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갖는 자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인정될 수 있다.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

61) 이원적 소득세제는 조세회피 방식을 통해 오히려 세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율의 누진도가 높을수록 더 큰 재분배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부유층은 조세회피(tax avoidance) 방법을 잘 활용하는 한편,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2, p. 218).

책적 및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⁶²⁾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불구하고 소득종류별로 실효세율 및 과세방법상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에게는 공제제도의 내용과 납세의무의 이행방법이 달리 설정되어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원천징수 분리과세)으로 납세의무를 소멸하게 하는 반면, 기타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인별로 종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누진구조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미만인 자는 금융소득합산과세를 받는 자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⁶³⁾ 그리고 그 자는 다른 종류의 소득을 얻는 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⁶⁴⁾ 이러한 방법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중립성을 제고하는 길이며 과세방법상으로도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만 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금융소득자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만약 이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고, 아울러 조세징수비용의 과다한 증가, 금융권의 혼란 등과 같은 많은 부정적인 점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책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법률규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만 하고 종합과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62) 헌재 2002. 10. 31, 2002헌마43(판례집 14-2, 538쪽).

63)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실효세율을 14%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2천만원, 근로소득 8천만원인 자와 금융소득 8천만원 근로소득 2천만원인 자의 산출세액을 비교할 수 있다.

64) 예를 들면, 연간 급여가 3천만원인 자의 경우 각종 공제를 받아 가장 낮은 세율인 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연간 금융소득이 3천만원인 자는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규정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4천만 원으로 설정한 것은 입법자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징수비용의 증가, 자금이동의 혼란 등의 문제와 아울러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의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4천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또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⁶⁵⁾

위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의한다면 우리 제도상으로는 이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되는 한편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정서일 것이다. 비록 자본소득에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도입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본소득이 많은 자에게 낮은 세부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이 점에서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지만 비과세·감면을 없애는 것⁶⁶⁾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라면 그로써 그간 자본소득의 실효세율 수준보다 더 높은 실효세율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들어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⁷⁾

한편 금융소득이 적은 자는 그간 금융소득이 많은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하여 왔는데 앞으로 동등한 수준의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자처럼 종합합산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⁶⁸⁾

참고로 2009년 이원적 소득세제적인 요소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으로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65) 헌재 2006.11.30, 2006헌마489, 공보 제122호, 1419, 1419-1419

66) 개인의 이자소득 중 정상적인 세율로 과세되는 금액의 비중은 48% 수준에 그친다(2004년).

67) 이는 그간 자본소득과세상 누진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했으므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개악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의 경우 14%의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의 비중은 전체 금융소득의 15.6%에 불과한 반면, 근로소득은 64.8%, 종합소득은 81.6%에 이른다는 분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06년 국세통계연보를 기초로 한 분석이다(안종석·전병목, 앞의 각주 14)의 책, p. 103).

68) 소득상위자에 대해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대신 소득하위자에 대해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의무적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폐기에 따라 수직적 형평이 위축되는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를 점하고 있다.⁶⁹⁾ 그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모두에 대해 종합과세하였다.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반만 소득금액으로 보던 세제를 유지하였다. 이자소득에 비해 배당소득은 여전히 자본가에게 다소 불리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배당소득은 전액 25%의 세율로 과세되므로 - 비록 25%의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 배당소득은 경제적 이중과세가 더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다가 낮은 25%의 세율로 과세됨으로써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지분증서보다는 채무증서를 더 선호하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독일인들은 원래 90년대 주식시장 붕괴 이후 주식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적 변화임에는 분명하다.

2. 자본이득과세 개선방안

(1) 비과세 배제 등 포괄성 확보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 자본이득도 일반소득처럼 담세력을 나타내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자본이득은 시장에서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 자본자산에는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자본자산이 어떤 것이든 동일한 것이며 그만큼 자본이득이라면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이득은 자본소득의 일종이다. 자본소득에 대해 노동소득과 비교하여 차등적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자본소득 안에서도 자본이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은 다른 종류의 자본소득과 비교하여 차등적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역시 적지 않은 논의가 가능하다.

이론적 논의와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노동소득과 다른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주요 국가의 동향을 보면 여러 이론과 논의에 불구하고 자본소득에 속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통일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 세제상 자본이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이론적 논의보다는 현실

69)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Max-Planck-Institut für Geistiges Eigentum, 각주 16)의 보고서, pp. 17-22.

적 필요성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에 의하여 형성되어 온 것이다. 양도소득 과세대상의 설정상 상당한 정도의 차별적 과세가 존재하고 있다.

자본이득과세상 차별은 과세대상 종류 뿐 아니라 과세대상의 귀속주체별로도 존재한다. 우리 소득세법상 개인의 국외원천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은 양도 전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자일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다.

크게 보아 이제는 포괄과세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국가에 있어서 과세상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다. 차별적 과세는 재정(arbitrage)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실질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 차별적 과세는 그 차별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 개별 항목별로 차별적 과세요소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개별 납세자에게 채권거래에 따라 실질적인 담세력의 변화가 있음에도 과세상 반영하지 않는 것이 되어 과세형평을 잃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손익은 과세되어야 한다. 정부입장에서는 어차피 세수에 차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⁷⁰⁾

선물 및 옵션과 같은 plain vanilla 또는 plain vanilla를 합성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자부상품 또는 배당부상품과 plain vanilla가 결합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파생상품 전반에 대해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소액주주 상장주식을 비과세하는 것은 소액주주의 재산형성보다는 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 자본시장이 완전히 국제화되어 이와 같은 목적의 조세특례는 그 의의를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투자자 인별 투자금액 일정한도 이내의 자본손익은

70) 양도차익은 장부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이이다. 취득 이후 시장이자율이 내려간 경우이다. 양수자 입장에서는 시장할증이 된다. 반대로 취득 후 시장이자율이 올라 양도자에게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이는 양수자 입장에서는 '시장할인'액이 된다. '시장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발행'시의 할인율이나 할증율을 기준으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장할증'이 발생하는 경우 양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자소득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과세상 반영받지 못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세대1주택 및 8년 자경농지 비과세의 경우 각각의 제도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생활단위가 4인 내외의 세대단위로 되어 있을 때 대체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없애 생활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2인 이하의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대 보다는 개인단위로 보아 해당 개인의 평생 주택양도차익 중 얼마의 한도 이내에서는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고급주택을 보유한자, 주거이전이 빈번한 자, 세대를 분할한 자에 대해 더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현행 세제의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과거 탈영농시대 도시중산층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오히려 귀농이 장려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8년의 기간 설정에 큰 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자경’의 해석과 적용상으로도 과학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다. 영농을 지속적으로 하는 농민의 농지대체취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과세 조항이 있으므로 8년자경농지비과세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⁷¹⁾

합병에 의해 주주가 실현하는 이익에는 배당적인 성격과 자본이득적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⁷²⁾ 현행 세제상으로는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상 차이가 존재하므로 피합병법인의 미처분이익영여금에 연원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나머지의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은 모두 자본소득으로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서 세율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세제로 나아간다면 이와 같은 기술적인 구분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서화골동품의 경우처럼 단순한 자본자산에 그치는 것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외원천소득 양도소득 과세상 5년 이상 거주자일 것의 요건은 과거 양도소득

71) 이 경우라도 해당 농지에서의 영농여부는 과세상 중요한 사항으로 남는다.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은 비업무용으로 중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72) 회사의 해산 또는 균등감자에 의해 실현한 주주의 이득은 그간 법인에 유보되어 있던 이윤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성격이 분명하므로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오고 있던 시절의 유습이므로 통상의 소득에 대한 것처럼 거주자일 경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유형별 포괄주의 조항의 도입

우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을 둔 것은 세제가 자본거래의 다양성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양한 형태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창출되는 자본거래라면 동일한 정도로 자본이득을 다양한 형태로 창출하게 된다. 하나의 자본자산에서는 늘 기간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나옴과 동시에 일시적 소득인 자본이득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이득에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처럼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을 두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다. 해당 조항은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처분하는 모든 경우를 포섭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장부가액상향조정의 폐지

부의 무상이전 과세가 이루어지는 무상양도 및 고저가 양도에 대한 과세상 자본이득 과세에 빈틈이 존재한다.

자산의 무상이전의 경우 무상이전자에 대한 양도소득과세가 없는 한편, 고저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자에 대해 양도소득과세가 있다. 부의 무상이전과세상으로는 두 경우 모두에 대해서 시가가 사용되는데, 양도소득과세상으로는 고저가 양도의 경우에만 시가가 활용되며,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0원)이 활용된다.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의 시가과세>

저가 양도	본인	① 양도소득과세상 차액만큼 증액
	상대방	② 증여세·소득세로 과세받은 부분만 추후 양도할 때 원가 인정됨 ⁷³⁾
고가 양수	본인	① 추후 양도 시 차액만큼 취득원가 감액 ⁷⁴⁾
	상대방	② 양도소득은 시가과세하고 실제거래가액 중 시가초과분은 증여세과세 ⁷⁵⁾

고저가 양도의 경우 위 표에서 ①과 ②의 부분은 경제적 이중과세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 시가와 다른 가액에 의한 자산양수도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가 우리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증여과세와 소득과세는 대체로 구분되고 있다. 자본이득과세상으로는 어떤 경우이든 그 과세에 빈틈이 발생하게 되면 형평성을 저해하고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현행 우리의 세법상으로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해 자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그 수증자가 제3자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장부가액을 인계받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⁷⁶⁾

한편, 자본이득과세가 근본적으로 이자 및 배당에 대한 기간소득과세와 경제적 이중과세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는 자본이득과세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헌법의 입장을 고려할 때 중요 고려사항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자본이득과세의 빈틈을 없애고 자산의 무상이전과세와 특수관계자간 자산양수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상이전시에는 무상이전자에 대한 양도소득과세 없이 장부가액을 그대로 이전하도록 하고 자산고저가양수도시에는 양도자에게 실제거래가액대로 과세하고 양수자에게

73) 증여세로 과세되는 부분(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법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3호 자목)은 추후 양도 시 취득원가에 가산함(소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고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되어 과세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취득원가에 가산함(동 항 제2호) ②.

7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75) 재재산-10, 2005.1.4.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시가대로 하여 계산하고 실지거래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양수한 자가 추후 양도할 때 인정받을 취득원가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이 가산될 것이다.

76)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결과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5년의 시한을 둔 것은 고의적인 planning의 시계를 임의적으로 설정한 결과이다. 국가로서도 5년 기간 내의 일이라면 가장 세금이 많은 방식으로 과세하겠다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굳이 이와 같이 복잡한 방식으로 과세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자본이득의 발생은 응익부담적인 측면에서 사회가 조세로 환수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며, 응능부담의 관점에서 과세하고자 한다면 자본이득의 규모에 맞추어 과세하면 그만인 것이다.

실제거래가액이 이전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병행한 채로 도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자간 자산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따로 둘 필요가 없게 된다.⁷⁷⁾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받은 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지는 별도로 논의할 영역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의 무상이전과세와 소득과세를 경제적 이중과세라고 하여 배제할 일은 아니다. 우리의 경제발전과정과 국민정서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는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우리나라, 독일 및 일본에서는 상속 및 증여를 경제력의 증가에 따른 직접세 과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개념상 소득세와의 중복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⁷⁸⁾ 일본은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 독일은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증여를 받은 자가 부담한 증여세액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우리 세법상으로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해 자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그 수증자가 제3자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장부가액을 인계받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과거에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4) 손익통산 범위 확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생애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노동에 의해 가득한 소득에 대한 중복과세의 성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이 특정한 시점의 담세력을 나타내는 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담세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금액은 순액으로 포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본이득은 위험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성격이 있으며, 자본이득이 과세대상이 되

77) 이는 개인간의 거래에 한정하고, 법인이 일방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일본 법인세법의 입장처럼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과세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8) 미국에서와 같이 자산의 무상이전을 거래세로 인식할 경우 증여세의 부과와 소득세의 부과는 독립적인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증여과세상으로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허용하는 한편, 상속과세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 점에서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는 데에는 위험프리미엄을 얻는 데 대한 과세라는 측면이 있다.

자본이득을 과세하려 한다면, 자본손실을 과세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에 부정적인 이론적 논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라면 과세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데에는 그 이론적 논의를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본손실이 발생할 때 그것의 상계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⁷⁹⁾ 자본손실의 상계대상을 자본이득으로 한정할 것인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제한 없이 인정할 것인지 문제이다. 그리고 자본손실을 자본이득과만 상계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성격의 자본자산의 이득과만 상계를 허용할 것인지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파생상품소득에 의한 손익을 현물손익과 상계할 수 있게 할 것인지도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 특정 자산의 자본손실의 상계대상 범위를 동일한 성격의 자산에 의한 자본이득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식이나 채권은 자본증권인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그 수익성과 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의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의 자본손익에도 그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 배당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의 완화를 위해 수령 배당공제의 방법을 채택하면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독일에서처럼 일률적으로 배당금액의 일정비율(예, 50%)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차익의 50%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주식양도손익을 채권손익과 상계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50%로 감액한 다음 상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⁸⁰⁾

자본손실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합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79) 자본소득의 창출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생략한다. 소득포괄개념을 제대로 적용하자면 자본소득의 창출에 기여한 자본비용을 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하여야 하지만 자본비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신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이원적 소득세제가 추구하는 단순화에 배치된다. 독일식으로 일정한 금융비용을 개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 일반소득과의 상계에 관한 논의는 생략한다.

80) 본 논문의 주된 주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의 배제 방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생략한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에는 이자소득과 채권양도손익이 있으므로 양자를 상계하도록 하고,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에는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손익이 있으므로 양자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음은 양자의 구분 없이 상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주식양도손익과 채권양도손익을 상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자의 방법을 택하고 상계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다. 주식과 채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자본자산이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양도손익 및 채권양도손익은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주식양도손익이 이자소득과 합산될 경우 주식시장의 투기적 행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파생상품손익이 자본손익이기 때문에 다른 자본손익과 통산을 허용할 것인가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파생상품의 손익의 통산범위는 파생상품도 자본자산이므로 여타 금융자산자본이득과 통산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통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파생상품거래손실을 다른 자본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흡수하는 격이 될 것이다. 파생상품시장의 규모를 정책적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조세가 그러한 기능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파생상품손실은 다른 자본소득과 통산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⁸¹⁾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를 인정할 것인가? 자본이득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변화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중과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본손실은 미래의 현금흐름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본손실을 미래의 자본소득과 상계하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일방적으로 국고에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국고의 사정을 보아 단계적으로 그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81)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현물손익과 통산을 불허한다.

3. 부담수준의 설정 문제

이론상 자본소득에 대해 노무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존재한다. 북구의 이원적소득세제에 의하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종합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나 서구국가나 일본은 기존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그대로 연장하고 있다. 이는 주로 세수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의 가장 낮은 율을 적용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안종석 등⁸²⁾에 의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 기간 자본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7%의 세율로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자본이득과세 확대 초기의 충격을 완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자본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점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점은 이원적 소득세제가 지향하는 포괄화 및 단순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의 14%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자본손실을 소득금액 계산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⁸³⁾

적정부담수준의 설정에는 이론적 논리보다는 정부재정여건에 대한 고려와 조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필자는 자본이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해 자본소득간 과세상 차등을 폐지하자고 하면서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와 다른 논리를 적용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상호모순의 소지가 있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일세율대신 복수세율을 사용하는 방법(핀란드), 일정금액 이하 자본소득자에게 종합신고를 허용하는 방법(독일), 노동

82) 안종석·전병목, 『자본소득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한국조세연구원, 2007. 12), p. 114~

83)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14%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오윤 등의 연구에 의하면, 2004년 피용자보수의 실효세율은 3.1%, 개인사업소득의 실효세율은 12.4%에 그친다(오윤·박훈·최원석, “금융 자본소득 세제의 중장기 개편방안”, 『세무와회계저널』, Vol.7 No.3, 2006, 한국세무학회).

소득 일정금액 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본소득의 종합신고를 의무화하는 방법(미국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본고에서 필자는 자본이득 과세의 범주 및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상 포괄성과 중립성 확대를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자본이득은 자본소득의 하나로서 다른 자본소득과 동일한 과세를 받아야 한다. 자본소득은 저축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소비기회를 담세력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이중적인 과세가 되므로 과세하면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게 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론적 설득력과는 별개로 현실의 세계에서 각국의 정부는 담세력을 기간단위로 파악하고 자본소득이 발생한 자의 현재의 소비기회에 착안하여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고 있다. 이 때 자본소득을 최초 저축의 원천이 되는 노동에 의한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일비례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제는 행정적 편의성 등 다른 이유에서이기는 하지만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부분 단일비례세율에 의한 과세제도를 수립해놓고 있다.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기 시작한 것이 아직 40년이 되지 않으며 그 과세범위도 제한되어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우리 소득세법상으로도 이제 모든 자본이득을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유형별 포괄주의적 규정을 도입을 제안하였다. 여전히 합리적 이유로 과세를 완화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제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외자산양도차익과세상 5년 거주자요건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개인의 자산의 증여의 경우 자본이득과세상 장부가액을 이전하도록 하면서 개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양수도에 대해서는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자본이득이 과세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손익통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월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자본이득과세는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따른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과거 부담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본이득의 조세부담수준에 있어서는 자본이득은 자본소득의 하나이며 여타 자본소득과 달리 볼 충분한 이유를 찾기 곤란하므로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달리 생애소비기회의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으며, 국제화한 자본시장에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판정하는 데 있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일세율분리과세가 바람직할 것이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정부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동일한 수준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 보아 자본소득분리과세는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우리 형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다소 응용된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가 주창한 자본이득과세의 포괄성 확대와 관련하여 그것에 대한 논리적 전제로서 논한 자본소득 단일세율분리과세상 배당소득의 경제적 이중과세의 구체적인 모습, 자본이득 과세대상에 포섭되는 파생상품손익과 같은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 등은 향후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고이텍스, 2007
- 노영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비교』, 한국조세연구원, 2002.12
- 안중석·전병목, 『자본소득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12
- 오윤, “소득 포괄주의 과세 도입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Vol.9 No.2(한국세무학회, 2008)
- 오윤·박훈·최원석, “금융 자본소득 세제의 증장기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Vol.7 No.3(한국세무학회, 2006)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2
- 이태로, “과세소득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6
- 홍범교·김진수,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12
- Christoph Spengel & Wolfgang Wiegard, “Dual Income Tax: A Pragmatic Tax Reform Alternative for Germany”, *CESifo DICE Report* 3/2004
- Doina Maria Radulescu&Michael Stimmelmayer, “Implementing a Dual Income Tax in Germany: Effects on Investment and Welfare”, *Ifo Working Paper No. 20*,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uenich, November 2005
- Klaus Tipke/Joachim Lang, *Steuerrecht*, Verlag Dr. Otto Schmidt Köln, 2010
- Michael J. Graetz and Deborah H. Schenk, *Federal Income Taxation*, Foundation Press(3rd ed., 1995)
- OECD, *Fundamental Reform of Personal Income Tax(No.13)*, 2006
- OECD,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Individuals(No.14)*, 2006
- Paul Kirchhof, *Der Weg zu einem neuen Steuerrecht*,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GmbH&Co. KG, 2005.9

Richard A. Brealey and Stewart C. Myers,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McGraw-Hill, 1996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Max-Planck-Institut für Geistiges Eigentum, Wettbewerbs- und Steuerrecht/Zentrum für Europäische Wirtschaftsforschung, “Reform der Einkommens- und Unternehmensbesteuerung durch die duale Einkommensteuer, Schriftenreihe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Federal Ministry of Finance series)”, Bonn, Vol.79 (2006)

Thomas Dalsgaard, “US Tax Reform: An Overview of the Current Debate and Policy Options”, *IMF Working Paper*, IMF, 2005.7

Wissenschaftlichen Beirats be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lat Tax oder Duale Einkommensteuer? Zwei Entwürfe zur Reform der deutschen Einkommensbesteuerung”, Juli 2004

Wolfgang Kessler and Rolf Eicke, “Welcome to the German Dual Income Tax”, *tax analysts*, tax notes international, August 27,2007

金字 宏, 『租稅法』 제10판(弘文堂, 2005년)

주제어 | 포괄적 소득, 자본이득세, 자본소득, 이원적 소득세, 장부가액 상향조정

<Abstract>

A proposal to improve capital gain taxation in Korean income tax law

Oh, Yoon

It's almost 10 years since the concept of "complete comprehensive gift" was introduced in the taxation of gift. For the income taxation an item is not to be taxable unless it is enumerated as a taxable income in the income tax code. The incompleteness of income taxation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code is the most prominent in the capital gain taxation area.

The author argues for the comprehensive capital gain taxation in terms of encompassing taxable capital gain items as well as assessing the amount of taxable gain. In principle all capital gain items should be taxed, for which purpose the author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capital gain concept". And the requirement of 5 year consecutive residency for the taxation of capital gain from a foreign located property should be discarded.

The author also proposes the abolition of stepping-up of basis through gift or inheritance taxation of a property. The actual purchase price of a property should be accepted for the computation of taxable gain amount under the income tax code, even where the property was purchased from a related party individual. The capital loss should be allowed to be setoff with capital income in the year of its accrual and afterwards. The abolition of stepping-up of basis may result in an economic double taxation on the capital gain which have accrued in the hands of the transferor. The gift tax or inheritance tax paid by the transferee may be counted as a purchase expense for the computation of capital gain amount of the transferee at the time of his sell-off.

The tax rate on capital gain should be set at the same level of the tax rate for capital income in general because capital gain is a capital income item. In an aspect

the taxation on capital income invites the double taxation of an life-long consumption opportunity. The correct determination of the attribution of an capital income to an individual is never an easy job for the tax administration in the age of open capital market. Those may explain for the introduction of a flat-rate capital income taxation.

The tax rate for capital income should be set at the current withholding tax rate on interest and dividend. A flat-rate capital income taxation will be able to be introduced only through full-fledged social discussions, which may result in the deviation from the original prototype.

Key words : comprehensive income, capital gain tax, capital income, dual income taxation, step-up basis